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	-----

제출년월일 : 2019. 0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매월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이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부과는 연체 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일할부과 방식으로 변경.

나. 수도요금에 대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감면제를 도입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을 현 고정비율에서 일할부과 방식으로 변경(안 제29조)

- 수도사용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은 미납요금×3/100×연체일수/30일) 납부

나. 다자녀가구 감면제 도입(안 제35조)

- 조례안 제35조제1항5호를 6호로 변경하고 5호 신설: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일반회계 보전 금액 51,415천원 추경 반영 계획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02.01. ~ 2019.02.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 $\text{미납요금} \times 3/100 \times \text{연체일수}/30\text{일}$)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연체금 및 독촉)</p> <p>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p> <p>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5. (생략)</p> <p>② (생략)</p>	<p>제29조(연체금 및 독촉)</p> <p>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u>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30일)을 징수한다.</u>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p> <p>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u></p> <p><u>6. (현행 제5호와 같음)</u></p> <p>② (현행과 같음)</p>

<붙임 1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10. 5. 25, 2013. 12. 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 제29조 (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연체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30일)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례 제35조 (요금등의 감면)

⑤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

○ 시행규칙 제24조 (수도요금의 감면)

② 조례 제 35조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대상과 감면횟수,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가구는 50퍼센트 감면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체금 일할 부과 방식 적용

- 연체금 부과 세입 연 2,200천원 감소 예상

○ 다자녀 가구 요금 50% 감면 적용(수도전 15mm, 가정용 사용시)

사용톤수	사 용 요 금 (원)			감 면 금 액 (원)		
	기본료	상수도료	계	10%	30%	50%
10	1,000	4,900	5,900	590	1,770	2,950
20	1,000	13,700	14,700	1,470	4,410	7,350
25	1,000	19,200	20,200	2,020	6,060	10,100

※ 2018년 12월말 기준 셋째이상 다자녀가구 558가구

나. 추계 결과

○ 일반회계 보전 금액 : 51,415천원

- 연체금 부과 세입 감소분 연2,200천원

- 다자녀 감면금액 558가구 × 7,350원 (월20톤사용, 50%감면시)×12개월 = 49,215천원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지 광 익
연락처	(033) 330 -2363